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0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임광현·황정아·이기헌

진선미 · 황명선 · 임오경

이인영 · 정성호 · 박희승
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

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"를 "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"로, "사업자"를 "사업자(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)"로, "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"를 "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,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중고자동차"를 "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이동 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, 중고자동차를 2 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

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) ① 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 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------사업자(중고이동통 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「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|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)--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 일까지,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를 2028년 12월 31일까지-----

- 1. (생 략)
- 2. <u>중고자동차</u>: 110분의 10
- ②・③ (생 략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<u>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</u> <u>단말장치</u>----
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